

10/31/21

설교 제목: 종, 살인, 부모 공경, 납치, 상해에 관한 법규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21 장 1-36 절

(출 21: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출 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출 21: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출 21: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출 21: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출 21: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출 21: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출 21: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출 21: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출 21: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출 21:11) 만일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먼저 여자에게 속전을 내지 말고 거저 나가게 하라

(출 21: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출 21: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출 21:1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출 21: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 21:16)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 21:17)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 21: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출 21:19)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출 21: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출 21:21)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출 21: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출 21: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출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출 21: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출 21: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출 21:27)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출 21: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출 21:29)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출 21: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출 21: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출 21: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출 21: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출 21: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출 21: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출 21: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값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후 법규를 주십니다.

(출 21: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계명과 법규를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장은 종, 살인, 부모 공경, 납치, 상해에 관한 법규입니다.

종에 관한 법규 중 남종에 관한 법규입니다.

(출 21: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인이 같은 동족에게 노예가 되는 경우는 빚을 갚지 못하였을 경우 그리고 도적질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일지라도 히브리인들은 종이 아닌 고용된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영구한 소유가 되어 후손에게까지 상속되어지는 이방인 종들과는 달리 6년 후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히브리인들의 안식년 및 희년 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여집니다.

주인이 남종을 해방시킬 때 세 가지 경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출 21: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출 21: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출 21: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출 21: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첫째는 결혼하지 않은 경우로 이때는 혼자 자유인이 되어 가면 되었습니다.

둘째는 종이 되기 전 이미 결혼을 하여 아내가 있었던 경우로 그 아내는 남편과 더불어 해방되어 갑니다.

셋째는 종이 된 후 상전으로부터 아내를 얻어 결혼을 한 경우인데 이 경우 남편은 해방될지라도 아내와 자녀는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한 조치입니다.

이때 만약 종이 상전과 상전으로부터 얻은 아내와 그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사랑하여 자신이 혼자 자유를 얻는 것을 포기하면 계속 상전의 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혹시 상전의 강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임을 재판장이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여종에 관한 법규입니다.

(출 21: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출 21: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출 21: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출 21: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출 21:11) 만일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먼저 여자에게 속전을 내지 말고 거저 나가게 하라

당시에는 가난이나 빚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아버지가 자식을 파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종은 주인의 첩이 되었으므로 6년 후에라도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상전이 눈에 차지 않아 그녀를 첩으로 삼지 않을 경우 그녀는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히브리 여자를 외국인에게 팔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원래 히브리 노예는 남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내에서만 매매하고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족 간에는 비록 노예라 하더라도 형제처럼 대우받을 뿐만 아니라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해방될 수 있는데 비해 외국인에게 팔려 가면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만약 상전이 새 첩을 들이는 경우에는 이전에 첩으로 취했던 여종에 대해 의식주 및 부부에 대한 의무를 계속 보장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여종은 속전을 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신분이 되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들 중 하나인 여종의 권리와 인격에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보여 줍니다.

또한 상전이 어떤 사람의 딸을 첩으로 삼기 위하여 샀으나 중도에 마음이 변하여 아들에 주는 경우 상전은 장차 며느리가 될 그 여종을 자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대해야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남종과 마찬가지로 7년째 되는 해에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살인에 관한 법규입니다.

(출 21: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출 21: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출 21:1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로 십계명 중 제 6 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세칙입니다.

이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도피성을 주심으로 하나의 살인이 기계적으로 또 다른 살인을 불러오는 것을 막으셨는데 이것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게 취급되어야 하는지를 사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갔을 경우라면 잡아내려 죽였습니다.

부모 공경에 관한 법규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십니다.

(출 21: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 21:17)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는 제 5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의 시행 세칙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갖은 고생을 감내하며 키워주신 분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책임자이기에 자식들로부터 공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고 저주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인륜을 저버린 배은 망덕한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치에 관한 법규입니다.

(출 21:16)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란 사람을 유괴하여 인신 매매 행위를 한 자를 말합니다.

인신 매매를 엄격히 금하기 위해 사형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한 손해 배상에 관한 법규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상해를 입혔을 경우

(출 21: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출 21:19)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일단 가해자를 감옥으로 보내고 제 3자로 하여금 부상자의 용태를 지켜보도록 한 후 만일 부상자의 용태가 좋아져 회복하게 되면 가해자는 치료비 전액과 피해 기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상자가 죽으면 실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상전이 종을 매로 쳐 죽이거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

(출 21: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출 21:21)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종이 즉사한 경우 상전의 구타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처벌합니다.

그러나 종이 즉사하지 아니하고 며칠을 경과한 후 죽으면 구타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미 종이 죽음으로 인해 주인이 당한 경제적 손실을 죄값으로 계산하여 상전에게 더 이상 처벌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상전의 종에 대한 살해 의도 여부에 따른 동기를 판별하여 체벌함으로써 종의 인권을 보호해 줌과 동시에 주인의 재산권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인을 상해했을 경우

(출 21: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출 21: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출 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출 21: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값을지니라

다른 해는 없고 태아만 낙태했을 경우 남편의 청구에 따라 재판장이 판결하여 보상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른 해가 있을 경우 동해보복을 허용했는데 이는 단순히 임산부를 보호한다는 차원을 넘어 개인의 보복을 최대한 억제시킴으로 보복의 남용과 악순환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공의를 철저히 수호하면서도 근본적인 사랑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보상 법규

(출 21: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출 21:27)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당시 종은 상전의 소유였으므로 자유인과는 다른 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렇지라도 한 인격체로서 종의 기본 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축으로 인한 피해 보상 법규

(출 21: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려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출 21:29)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려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출 21: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출 21: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출 21: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려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 그 소를 돌려 쳐 죽이고 소의 임자는 형벌을 면해 주었습니다.

도덕심이 있을리 없는 소에게도 사람과 같은 법규를 적용함으로써 짐승도 율법 아래 있다는 것과 그리하여 생명에 대한 피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의 주인이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방치하여 사고가 났다면 소는 돌려 쳐죽이고 소의 임자는 죽이든지 속전을 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 해태죄 입니다.

구덩이(우물이나 샘)로 인한 상해 보상 법규

(출 21: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출 21: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당시 우물은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우물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곳에 짐승이 빠졌을 경우 우물의 주인이 짐승의 주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 3500 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규들이 작금의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우리는 법규를 보면서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근본 정신인 공의와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규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법규가 종의 해방에 관한 법규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만을 위한 법규가 아니고 구속 사역까지를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구속 사역이란 죄 값에 팔린 종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가슴 뭉클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5-6 절 말씀입니다.

7 년이 되어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본인 뿐 상전이 준 아내와 자식은 두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종이 진정으로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여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그는 재판장에게로 가 자신의 의사를 밝힌 후 귀를 뚫고 영영히 그 상전의 종이 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행해주신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 2: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영광을 비우시고 어찌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종의 길을 택하셨습니까?

상전(하나님)과 처자(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귀를 뚫는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에 수족이 못 박히는 고난을 자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이 가슴 저린 사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